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모든 입찰행위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입찰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져 전자입찰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수료 항목 중 입찰참가 신청 시 징수하던 수수료 중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시 수수료는 폐지하고 전자입찰 이외의 입찰참가 신청자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신청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안 별표1)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입찰 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진 전자입찰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감소된 세외수입의 보전을 위한 안입니다.

수수료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번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서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 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리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모든 입찰행위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관련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에 대한 참가신청 수수료가 폐지됨으로써 감소된 세외수입의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경쟁입찰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에게 1건당 5,000원”을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경쟁입찰참가자 및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에게 1건당 10,000원”으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소될 세외수입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자치구와의 형편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